

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

의안 번호	9-59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안산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제시 및 다양한 문화주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함으로 안산시민의 문화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제1조)
- 조례의 기본이념 (제2조)
- 문화, 문화권, 문화주체, 문화자치 등의 정의 (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제4조)
- 시장의 책무 (제5조)
- 시민의 문화권 보장 (제6조)
- 문화자치 기반 마련 및 문화예술의 육성 등 (제7조 ~ 제10조)
-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 등 (제11조)
-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(제12조 ~ 제16조)

□ 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2】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3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입법예고 : 2024. 9. 20. ~ 2024. 10. 10. (20일간)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기본법」의 기본이념과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안산시민의 권리와 안산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문화”란 「문화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.
- “문화권”이란 「문화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.
- “문화주체”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, 법인, 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.
- “문화자치”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, 문화자치 기반 구축,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

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문화권 보장) ① 시장은 시민이 거주지, 성별, 나이,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,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,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창조, 문화 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문화자치 기반 마련)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,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활동 지원)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문화예술의 육성) 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,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,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

든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,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)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· 시행 등) 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 문화자치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 · 시행 ·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제4항 및 「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」 제11조에 따른 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 · 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
2.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5. 문화유산 ·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
6.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
7.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
8.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
9. 문화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10.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 · 발전에 관한 사항
11.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

12.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
13.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14. 국제문화 교류·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15. 그 밖에 시 문화자치 시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제12조에 따른 시 문화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·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문화자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 2.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당연직 위원: 문화 정책관련 업무담당 국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안산시의회 의원 2명

나.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, 시민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

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⑤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의 해촉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

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6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,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7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」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⑥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「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」 제11조

에 따른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관광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관광과장 두현은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문화종교팀장 유은숙
	담당자 성명·전화	고성혜 (행정 2798)

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590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12월 4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, 기본계획 및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함.

□ 주요골자

- 전단 “시 문화자치”를 “안산시 문화자치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시 지역문화진흥”을 “안산시 지역문화진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 문화자치위원회”를 “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”로 함.(안 제11조)
- 제목 “(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 문화자치위원회”를 “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존속기한을 2029년 11월 30일로 신설함.
(안 제12조)
- “시 문화자치”를 “안산시 문화자치”로 함.(안 부칙 제2조)

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 전단 중 “**시 문화자치**”를 “**안산시 문화자치**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**시 지역문화진흥**”을 “**안산시 지역문화진흥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시 문화자치위원회**”를 “**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**”로 한다.

안 제12조의 제목 “**(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”을 “**(안산시 문화자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시 문화자치위원회**”를 “**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**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1월 30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제2항 중 “**시 문화자치**”를 “**안산시 문화자치**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<신 설>

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1월 30일로 한다.

부 칙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(생 략)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으로 본다.

부 칙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안산시 문화자치 -----
--.